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. 2. 25 선고 2019가단4607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주식회사 B(변경전 상호: 주식회사 C)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2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8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2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이지회

별지